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물 이용부담금 산출은 상기 방법 외에도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제5절 자율적 관리기반 조성

1. 자가측정제도

자가측정제도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억제·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가측정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측정대행업, 수질오염물질측정대행업, 소음진동측정대행업을 등록토록 하여 측정대행하게 하고 있다.

측정 횟수는 배출시설의 종별에 따라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2월 1회, 분기 1회 이상 등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특정대행 의뢰시 성적서를 발급 보관하며 자가측정이 가능한 사업자는 자가측정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법이 개정되어 자가측정제도도 권고사항으로 개선되었으며 자가측정자료는 배출부과금 및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2. 환경마크 제도

(1) 개요

환경마크제도는 제조·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정해주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기업체로 하여금 저공해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목적은 환경상태를 선택·사용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도입배경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도 자사제품을 녹색상품, 무공해상품, 바이오상품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용어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저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 제품인지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1990년말부터 환경마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외국에 자료수집 및 분석 실시계획 수립,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의견수렴과 환경 마크 도안공모 등을 통해 1992년 5월에 “환경마크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령: 1995. 6. 1, 시행규칙 : 1995. 6. 10)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하는 환경마크 부여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환경마크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환경상품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3) 환경 마크의 상징

환경마크는 중앙에 환경마크 도안이 있고, 도안의 상단에 환경보전이 표어인 “더 맑게 더 푸르게”가 인쇄되어 있으며, 도안 하단에 환경에 대한 “마크”임을 명시하고, 도안을 둘러싸고 있는 원 아래에 환경마크 인증사유를 표시하고 있다.

환경마크의 도안은 우리나라와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태극을 소재로 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공기, 물, 흙 등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을 상징하고, 윗 부분은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나무와 새를 표현함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 제품인지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진1-135 : 환경마크

으로써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을 상징하고 또는 “자연”의 일부분인 대기를 상징하고 있다.

환경마크의 주 색상으로 쓰인 녹색과 청색은 깨끗함, 희망, 젊음, 생명, 풍요 등을 상징하고 있다. 즉, 환경마크는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공기, 물, 흙” 등 “자연”에 둘러싸여 조화를 이루며 번영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3. 환경친화 기업 지정 및 육성

산업계에 대한 사후규제 중심의 현행 환경정책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정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는 어렵고 오염저감 차원에서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켜 생산공정까지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업계의 빠른 대응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중인 국제환경 표준규격(ISO 14000시리즈)의 국내수용을 확산시키려는 뜻도 내포한다.

이러한 체제에 업계 스스로 참여코자 할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실행토록 하고 지속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오염물질 사후관리와 생산공정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영향을 파악토록 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개선목표를 유도하고 있다.

이 체제를 도입한 기업은 환경부서 및 사내 조직에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여 생산공정에서부터 공법대체나 시설교체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최종처리 역시 방지시설의 최적운전 조건을 유지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체제의 보급을 통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면제하여 허가과정의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지도단속



오염물질 사후관리와 생산공정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영향을 파악토록 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개선목표를 유도하고 있다.

의 면제와 환경친화 기업의 이미지를 제품을 통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확인기기 부착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물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각 사업장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pH자동측정기, 유기물질자동측정기 등 각종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유기물 자동측정기에 한해서는 3종이상의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1994. 7. 26)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4·5종 사업장이 새로이 3종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모별 구분이 변경되는 사업장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폐수이용율을 높이고자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적산유량계를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환경안전 진단의 날』 지정 운영

1995년에 발생하였던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사전 안전진단 소홀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였다. 1991년의 낙동강 폐놀오염사고 및 1994년의 유기용제류 오염사고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였던 대형 환경오염사고 역시 현장관리자의 부주의, 시설노후 및 관리부실 등 주로 인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대형수질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에게 항상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하천감시 등의 행정적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체 스스로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취약 요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시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1995. 5)하고, 산업별로 안전진단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러 우수실천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등 『환경안전진단』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은 우선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환경부서와 생산, 시설 등 관련부서와 “환경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안전진단 체제를 주간, 월간 및 분기 등으로 차등화 하여 안전진단 참여 부서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단위 또는 시설종류별로 상호간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교환안전진단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한 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하여는 토의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반복 순환함으로써 완벽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 산업폐수 10% 줄이기 운동 추진

심한 가뭄으로 인한 하천 유수량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도 상승 등 수질오염 현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산업화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매년 오염물질 발생부하량이 증가되고 있는 등 수질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갈수기 등 취약시기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업·민간단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폐수 10%줄이기 운동”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까지 1996년도의 오염 부하량의 30% 감량을 목표로 기업 그룹·직능단체 또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실정에 맞는 폐수 10% 줄이기, 장·단기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매년 폐수 방류량을 5%씩 절감하고, 또한 방류수 농도를 5%씩 줄이는 등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방류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그린(GREEN)개념을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형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집필 :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상철